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4415호, 1991. 12. 14)으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조정됨에 따라
- 충청북도세조례 제28조(부과지역의 고시)에 의거 부과지역을 고시하기 위함.

주요골자

- 부과지역 - 시지역 : 136동 중 135동
- 군지역 : 1,383리동중 398동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5조의 2(도세)
- 지방세법 제239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41조(부과경수)
- 충청북도세조례 제28조(부과지역의 고시)

기타참고자료 : 별 첨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안)

충청북도고시 제1992- 호

충청북도세조례제28조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2. 4.

충 청 북 도 지 사

시 군	읍면동	리	동
청 주 시	전 지 역		
충 주 시	전 지 역		
계 천 시	전 지 역	(자작동 제외)	
청 원 군	남 성 면	이목리, 관정리, 귀래리	
	미 원 면	미원리, 내산리, 수산리, 운암리, 성대리	
	가 덕 면	인차리, 행정리, 삼향리, 계산리, 시동리, 병암리, 노동리, 수곡리	
	남 일 면	효촌리, 두산리, 쌍수리, 고은리, 화당리	
	남 이 면	척산리, 의천리, 척북리, 석실리, 대련리, 수대리	
	문 의 면	미천리, 남계리, 상장리, 괴곡리, 노현리	
	현 도 면	선동리, 매봉리	
	부 용 면	부강리	

시 군	읍면동	리	동
청 원 군	강 내 면	담연리, 월곡리, 다락리, 태성리, 석화리, 사인리, 학천리, 월탄리	
	강 외 면	오송리, 봉산리, 정중리, 서평리	
	옥 산 면	오산리, 가락리, 덕촌리, 신촌리, 국사리, 소소리	
	오 창 면	장대리, 창리, 복현리, 양지리, 가곡리	
	북 이 면	신기리, 내추리, 신대리, 서당리, 현암리, 대길리, 대율리, 장재리	
	북 일 면	마산리, 도원리, 내수리, 원통리, 신안리, 학평리, 세교리, 풍정리, 비상리	
보 은 군	보 은 읍	삼산리, 죽전리, 장신리, 교사리, 수정리, 성주리, 이평리, 강신리, 풍취리, 강산리, 증동리	
	내 속 리 면	상판리, 사내리	
	외 속 리 면	장내리, 하계리, 황곡리, 구인리, 서원리	
	마 로 면	판기리, 수문리, 송현리, 기대리	
	탄 부 면	하장리, 구암리, 대양리, 벽지리, 임한리	
	삼 승 면	원남리, 내당리, 탄금리, 상가리, 서원리, 천남리	
	수 한 면	병원리, 교암리, 발상리, 후평리	
	회 남 면	조곡리, 거교리, 남대문리	
	회 북 면	중앙리, 용촌리, 부수리, 눌곡리	
	내 북 면	창리, 도원리, 성암리, 동산리	
	산 외 면	구티리, 봉계리, 문암리, 아시리	
	옥 천 군	옥 천 읍	죽향리, 상계리, 하계리, 교동리, 동안리, 수북리, 문정리, 대천리, 마암리, 양수리, 금구리, 장야리, 삼양리, 서정리, 시대리, 삼청리

시 군	읍면동	리	동
영 동 군	동 이 면	평산리, 세산리, 직하리, 조령리	
	안 남 면	연주리	
	안 내 면	현리, 정방리, 장계리	
	청 성 면	산계리	
	청 산 면	백운리, 지전리, 교평리, 판수리, 효목리	
	이 원 면	건전리, 강창리, 윤정리	
	군 서 면	동평리, 금산리, 오동리	
	군 북 면	이백리	
	영 동 읍	계산리, 동정리, 회동리, 매천리, 부용리, 설계리	
		오탄리	
	용 산 면	구촌리, 신향리, 천작리, 한곡리, 매금리, 상용리, 용산리	
	황 간 면	남성리, 신흥리, 마산리, 광평리	
	추 풍 령 면	관리, 추풍령리	
	매 곡 면	노천리	
	상 촌 면	임산리, 돈대리	
	양 강 면	괴목리, 가동리, 양정리, 묘동리	
용 화 면	용화리, 용강리		
학 산 면	서산리, 학산리, 아암리, 박계리		
양 산 면	가곡리, 원당리, 송호리		
심 천 면	심천리, 초강리, 용당리		
진 천 군	진 천 읍	읍내리, 교성리, 신정리, 행정리, 장관리, 삼덕리, 벽암리, 성석리	

시 군	읍면동	리	동
진 천 군	덕 산 면	용봉리, 신척리, 한천리, 합목리, 구산리	
	초 평 면	용정리, 오감리, 중석리	
	문 백 면	봉죽리, 옥성리	
	백 곡 면	석현리, 구수리	
	이 월 면	송림리, 중산리	
	만 승 면	광혜원리, 실원리, 금곡리	
괴 산 군	괴 산 읍	동부리, 서부리, 대사리, 대덕리, 정용리, 제월리	
	중 평 읍	전지역(율리제외)	
	감 물 면	광전리	
	장 연 면	오가리, 추절리	
	연 풍 면	삼풍리, 행촌리	
	칠 성 면	도정리	
	문 광 면	광덕리, 송평리	
	청 천 면	청천리, 선평리	
	청 안 면	읍내리, 부흥리	
	도 안 면	전지역(연촌리제외)	
	사 리 면	사담리, 방축리	
	소 수 면	수리, 입암리	
	불 정 면	목도리, 창산리	
	음 성 금	음 성 읍	읍내리, 평곡리, 석인리, 용산리, 신천리
금 왕 읍		무극리, 금석리, 경생리, 내송리	
소 이 면		대장리, 중동리, 후미리, 문동리, 금교리	

시 군	읍면동	리	동
음 성 군	원 남 면	보천리	
	맹 동 면	쌍정리, 인곡리, 본성리	
	대 소 면	오산리, 태생리, 소석리, 오류리, 대풍리	
	삼 성 면	덕정리, 양덕리, 천평리, 선정리	
	생 극 면	신양리, 병암리, 도신리	
	감 곡 면	오향리, 오궁리, 상우리, 왕장리	
중 원 군	살 미 면	색성리	
	상 모 면	은천리, 안보리, 화천리, 사문리, 중산리, 수퇴리	
	이 류 면	대소리, 금곡리	
	주 덕 면	신양리, 창전리, 삼청리, 신중리, 화곡리, 제내리, 장록리, 당우리	
	신 니 면	용원리, 신창리, 마수리	
	노 은 면	문성리, 연하리	
	양 성 면	용포리, 본평리, 용대리	
	가 금 면	탑병리, 가흥리, 하구암리	
	금 가 면	하담리, 잠병리, 사암리	
	동 광 면	조동리	
	산 척 면	송강리, 영덕리	
	엄 정 면	용산리, 율농리, 목계리, 미내리	
	소 태 면	오량리, 중청리, 복탄리	
	제 천 군	금 성 면	구룡리, 적덕리, 양화리(절골)
청 풍 면		물태리	
수 산 면		수산리, 내리	

시 군	읍면동	리	동
제 천 군	덕 산 면	도전리(성내, 후촌, 월룡), 성암리, 선고리(선고3리)	
	한 수 면	송계리(송계4리 제외)	
	백 운 면	평동리, 원월리(원서)	
	봉 양 면	주포리, 장평리(안고모동 제외), 미당리, 명도리(매골제외), 봉양리(동막제외), 팔송리, 연박리(연박1리)	
	송 학 면	무도리(무도3리제외), 입석리, 장곡리, 도화리, 시곡리	
단 양 군	단 양 읍	별곡리, 도전리, 상진리, 현천리	
	매 포 읍	매포리, 우덕리, 하괴리, 안동리, 평동리, 가평리, 삼곡리, 고양리	
	단 성 면	북상리, 북하리, 상방리, 중방리, 하방리	
	대 강 면	장림리, 당동리	
	가 곡 면	사평리	
	영 춘 면	상리, 하리, 별방리	
	어상천면	임현리	
	적 성 면	현곡리, 상리, 하리	

참 고 자 료

충청북도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관련서류

- 지방세법(부분발췌)
- 충청북도세 조례(부분발췌)
- 충청북도소방서조직규칙(부분발췌)
- 내무행정표준예규집(부분발췌)

지 방 세 법 (부분발췌)

제5조의2(도세) ①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92. 12. 14개정)

② 도의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마권세

③ 도의 목적세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시설세
2. 지역개발세

제239조(납세의무자) ① 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91. 12. 14 개정)

② 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241조(부과징수)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또는 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91. 12. 14개정)

충청북도세조례(부분발췌)

제28조(부과지역의고시) ① 도지사는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부과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忠清北道消防共同施設税賦課地域現況

市 郡 別	計			賦 課 地 域			未 賦 課 地 域		
	計	洞	里洞	計	洞	里洞	計	洞	里洞
合 計	(100) 1,519	136	1,383	(35) 533	135	398	(65) 986	1	985
清 州 市	(100) 82	82		(100) 82	82		0	0	
忠 州 市	(100) 26	26		(100) 26	26		0	0	
堤 川 市	(100) 28	28		(96) 27	27		(4) 1	1	
清 原 郡	(100) 251		251	(30) 75		75	(70) 176		176
報 恩 郡	(100) 174		174	(30) 52		52	(70) 122		122
沃 川 郡	(100) 125		125	(29) 37		37	(71) 88		88
永 同 郡	(100) 131		131	(30) 39		39	(70) 92		92
鐵 川 郡	(100) 83		83	(30) 25		25	(70) 58		58
槐 山 郡	(100) 148		148	(29) 44		44	(71) 104		104
陰 城 郡	(100) 114		114	(30) 34		34	(70) 80		80
中 原 郡	(100) 136		136	(30) 41		41	(70) 95		95
堤 川 郡	(100) 113		113	(21) 24		24	(79) 89		89
丹 陽 郡	(100) 108		108	(25) 27		27	(75) 81		81

※ ()는 %임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선정기준

1. 과세대상

- 대상지역 : 소방혜택을 받는 지역
- 대상물건 : 건축물

2.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지역내의 건축물의 소유자

3. 과세기준일 및 납기

- 납세기준일 : 5월 1일
- 납 기 : 6. 16~6. 30

4.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함

(최하 1,000/0.6~최고 1,000/1.6,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의 증과세)

5. 부과지역 선정기준

- 충청북도 소방서, 소방관파출소 관할구역으로 규정된 법정리동
※ 충청북도 소방서 규칙 제5조('91. 12. 31개정)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 설치된 소방서, 읍, 민의용소방대 관할구역으로서 소방차 또는 소방펌프가 비치되어 20분 이내 출동 전화가 가능한 지역
※ 내부행정 표준에규집(광역소방응원체제확립, 다. 응원협정기준)

충청북도 소방서조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충청북도지사 이 동 호

1991년 12월 31일

◎ 충청북도규칙 제1815호

충청북도소방서조직규칙중개정규칙

충청북도 소방서조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군의 소방서직제 제3조 제3항 및 소방시설치에 관한규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방기관설치 및 정원에 관한규정 제7조 제3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제5조 제2항중 별표2를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충청북도소방서소방관파출소의명칭및관할구역표(개정안)

소방서별	파출소별	위 치	관 할 구 역
청 주 소 방 서	중앙파출소	북문로 2가 116-90	영동, 북문로1, 2, 3가, 서문, 수동, 문화, 서문, 남문로1, 2가, 남주, 달동, 대성, 명암, 용담, 산성, 우암동
	북대파출소	북대동 265-1	가경, 북대, 봉명, 송정, 장서 1, 2동
	남부파출소	모충동 94-9	석교, 모충, 영운, 용정, 산남, 미평, 분평, 수곡, 근천, 방서, 강암, 지북, 월오, 평촌, 운동, 강성, 용암동
	사직파출소	사직동 808	사직 1, 2동, 사항, 신봉, 운천, 농촌, 개신, 죽면, 성화동
	율랑파출소	율랑동 697-2	내덕 1,2동, 율랑, 사천, 정하, 정북, 정상, 오동, 주중, 외남, 외하, 외평, 주성동, 정원군 복일면, 복이면, 오창면 일원
	문의파출소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228-54	청원군 문의면, 남이면, 남이면 일원
	증평파출소	괴산군 증평읍 교동리 65	괴산군 증평읍, 도안, 사리면 일원
	옥천파출소	옥천읍 금구리 149	옥천군 옥천읍 일원
	진천파출소	진천읍 읍내리 370	진천군 진천읍, 진천군 문백면 일원
충 주 소 방 서	중부파출소	연수동 529-1	충주시 교현2, 연수, 덕령, 용단, 종민, 금동, 칠금, 봉방, 여전, 달천, 용관, 용두동, 양성, 스테, 엄정, 산척, 동양, 금가, 노은, 가금면 일원
	남부파출소	교현동 352-1	교현1, 성내, 성서, 성남, 충인, 충의, 용신, 지현, 호암, 직동, 단월, 가수, 풍동, 안림, 목벌동, 신나, 주덕, 이류면 일원
	수안보파출소	충원군 상모면 은천리 100	충원군 상모면, 살미면 일원
제 소 방 서	중앙파출소	정전동 106-4	교동, 중앙1·2동, 남천, 명서, 의림, 용두, 정전동, 제천군 봉양, 금성, 정봉, 수산, 덕산, 한수, 백운면 일원, 단양군 대포읍 일원
	화산파출소	화산동 147	영천 1, 2동, 화산 1, 2동, 동현, 두학동, 제천군 송하면 일원

内 務 行 政
標 準 例 規 集
(行 事 · 事 業 · 指 示 編)

소 방 분 야 643

8-3-4 광역소방응원체제 확립

〈목 표〉

관할지역내외의 직장자위소방대 및 군소방력을 결속, 유사시 전소방의 동원태세를 확립

〈방 침〉

- 전국 소방서 및 전의용소방대의 인근소방력 보유 군부대 및 자위소방대와 응원협정을 체결
- 의용소방대는 차량보유대에 한하여 협정
- 응원협정기관과 합동으로 실제 출동훈련 실시

〈추진계획〉

1. 광역소방응원체제의 정비

가. 정비기간 : 매년 3월

나. 응원협정 책임

구 분	관할지역내	시 · 군 간	시 · 도 간
소방서지역	소방서장	소방서장	도지사
미설치지역	군수(시장)	"	"

다. 응원협정 기준

구 분	기 준	소 요 시 간 (1 km 당 평균)	거 리 (최 단 / 최 장)	최 장 소 요 시 간
복잡한시가지	3 분	10km	15m 이내	30분 이내
중 소 도 시	2 분	15km	20m 이내	
소도읍포장도로	1분 30초	15km	20m 이내	
비포장도로	3 분	10km	12m 이내	

* 단 중요소방대상처가 있는 지역 또는 대화로 인하여 출동요청이 불가피할시는 응원기준에 관계없이 합성을 체결하고 출동하여야 한다.